

2014년도

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『2014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·연구기관 등 주관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1월 10일
중 소 기 업 청 장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

□ 지원규모 : 165억원(신규)

□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
□ 지원분야

-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
-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·연구장비의 활용 지원

2. 신청자격

□ 참여기업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-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
 -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 - 부도 또는 휴·폐업중인 중소기업
 -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
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

□ 주관기관

-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도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 -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
 -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
 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
 -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
 -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
 -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자
 -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
 -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법인

-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
-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
 -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 -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
 -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

3. 지원금액 및 한도

□ 출연금 지원기준

- 정부출연금 : 총 장비이용료의 60~70%이내
- 기업부담금 : 총 장비이용료의 30~40%

구 분	정부지원금	기업부담금
창업기업 (업력 7년이하)	70% 이내 (최대 3천만원)	30% 이상 (현금)
일반기업 (업력 7년초과)	60% 이내 (최대 3천만원)	40% 이상 (현금)

□ 바우처 구매

- 장비이용을 위한 바우처는 예산 소진시까지 정부지원금(최대 3천만원 한도)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최대지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
- 참여기업 지원한도 내에서 사용완료 후 추가구매 가능

4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참여기업 신청기간

- 신청접수 : 2014년 2월 10일 ~ 12월 31일(예산 소진 시까지)

□ 주관기관 신청기간

- 신규신청 : 2014년 1월 13일 ~ 1월 27일(15일간)
- 기존 주관기관 : 2014년 1월 13일 ~ 1월 20일(8일간)
* '13년 주관기관은 서면평가, 현장평가 등을 생략하고 선정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(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) 신청·접수

- 종합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tech.go.kr>

5. 선정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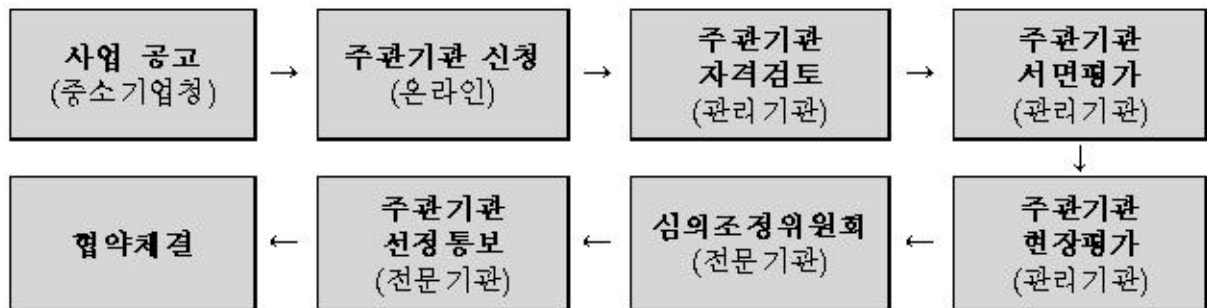
□ 참여기업 선정절차

- 전문기관이 신청기업의 업력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
- 관리기관(지방중기청)이 신청기업 자격여부에 대하여 서면검토 후 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
- 전문기관은 당해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평가점수에 따라서 사업 참여 최종 승인
- 신청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2014년도 사업기간 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

□ 주관기관 선정절차

- 관리기관이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검토, 서면·현장 평가 후 전문기관에서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
- 주관기관으로 선정통보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장비 등록
- 주관기관은 연구장비 등록 완료 후 7일 이내에 관리기관, 전문기관과 3자 협약체결

< 주관기관 선정절차 >



6. 기타사항

-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'14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통합공고문, 동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름

7. 문의 및 확인

- 관리기관(지방중소기업청)

관리기관명	전화	주소
서울지방중소기업청	02-2110-6358	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
부산·울산지방중소기업청	051-601-5145	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
대구·경북지방중소기업청	053-659-2502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침단로 122-11
광주·전남지방중소기업청 (제주시험연구센터)	062-360-9160 064-723-2101	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(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-21)

경기지방중소기업청	031-201-6977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
인천지방중소기업청	032-450-1174	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
대전·충남지방중소기업청	042-865-6146	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
강원지방중소기업청	033-260-1642	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
충북지방중소기업청	043-230-5334	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
전북지방중소기업청	063-210-6452	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
경남지방중소기업청	055-268-2585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

○ 전문기관(한국산학연합회)

부서명	전 화	문의사항
중소기업 R&D 콜센터	1661-1357(내선 3)	신청·접수 및 사업문의 등

※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
-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tech.go.kr>
-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: <http://www.smba.go.kr>
- (사)한국산학연합회 홈페이지 : <http://auri.or.kr/>